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94

발의연월일: 2021. 2. 18.

발 의 자:이재정・이탄희・김원이

진성준 · 김영호 · 김민기

도종환 · 김병욱 · 이규민

윤재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외교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고자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외교 활동은 외국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써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공외교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과 활동을 명시하여 재외공 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 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외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공공외교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은 공공외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개 정 안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 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 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 여야 한다. ② 공공외교를 하고자 하는 지 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은 공 공외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외 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 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
	<u>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u> 수 있다.